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18

대 구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0구합376 취득세등환급
원 고	A
피 고	[redacted]시장
변 론 종 결	2020. 6. 18.
판 결 선 고	2020. 8.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2016. 9.경 납부한 취득세 등 29,659,920원(과세번호: B, C)을 환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18

가. D는 2014. 7. 15. 피고로부터 [redacted]시 E 지상에 14세대 규모의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고, 2014. 9. 24. 피고에게 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한 착공신고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5. 2. 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동주택의 건축주를 D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건축관계자변경신고를 마치고 이 사건 공동주택을 완공하여 2016. 5. 30.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6. 9. 8.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동주택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 취득세 등으로 29,659,920원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2016. 11. 18.경 위 취득세 등을 모두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취득세 경정청구 및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0. 3. 25.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반려하였다.

- 종전 규정에서 이미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다면, 법률불소급의 원칙상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의 법령에 따라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두5773 판결 참조). -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례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므로(대법원 2003. 4.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서민주거형 공동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지방세 감면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일몰된 감면조항을 특별히 명시한 조항 없이 '일반적 경과조치' 부칙만을 적용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18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2. 31. 이전에 분양을 목적으로 이 사건 공동주택 건축의 사업승인을 받아 착공 및 분양공고를 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가 면제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 29,659,920원을 환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 12. 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제12175호, 2014. 1. 1.> 제3조는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기 위하여는 면제의 대상이 되는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2014. 12. 31.까지 성립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18

경우여야 할 것이다.

2)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하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28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6항 본문에 의하면,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일이 2016. 5. 30.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공동주택의 사실상 사용일이 위 2016. 5. 30.보다 빠르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사용승인일인 2016. 5. 30. 이 사건 공동주택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때 원고의 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면제의 대상이 되는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2014. 12. 31.까지 성립하지 아니한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달리 2014. 12. 31. 이전에 이 사건 공동주택 건축의 사업승인을 받아 이 사건 공동주택의 착공 및 분양을 하였음을 이유로 위 법률 규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제12955호, 2014. 12. 31.> 제14조가 일반적 경과조치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납세자의 신뢰보호의 관점에서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18

제33조 제1항은 취득세 면제의 특례가 적용되는 종기(이하 '일몰기한'이라 한다)를 2014. 12. 31.로 명시하여 위 특례가 한시적인 조치임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으므로 일몰기한의 도래를 얼마 앞두지 않은 2014. 9. 24.경에야 이 사건 공동주택의 건축에 착공한 D나 D로부터 건축주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로서는 취득세 면제의 특례가 종료될 것임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종래 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일몰기한이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해서 연장되어 왔다고 하더라도 향후에도 다시 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일몰기한이 다시 연장될 것이라는 단순한 기대를 보호해 주는 경우 입법자가 일몰기한의 종료에 즈음하여 변화된 정책적 환경과 조세공평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특례의 존속 여부 및 적용범위 등을 다시 정하기 위하여 취득세 면제의 특례를 한시법령의 형태로 규율한 입법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는 점, ③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은 취득세 면제의 특례가 적용되는 종기를 2014. 12. 31.로 명시한 채 2014. 1. 1. 개정된 이래 현재까지 개정된 바 없이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부칙 제14조를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될 것이라는 정당한 신뢰를 형성하였다거나 법령이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redacted] 판사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18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18

별지

관계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부칙 <제12175호, 2014. 1.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 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955호, 2014.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 제12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28조제1항 및 제173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18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 구 지방세법(2019. 8. 27.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28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끝.